

# 법이 외면한, 장시간 노동자들

## 장 종 수

9/17/202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 법이 외면한, 장시간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시단속적노동자, 특례업종노동자, 돌봄노동자.....

발표

장종수 (노무사, 시간센터 운영위원)

일시

2025년 9월 17일(수) 19시

장소

온라인 (줌 Zoom)

신청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http://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문의: [kilshlabor@gmail.com](mailto:kilshlabor@gmail.com)

# 목차

1.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 의도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 : 감시단속적 노동자, 특례업종노동자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4. 장시간 노동 뒤에 장시간 노동자 없다 : 편법으로 장시간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

## 1.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별표1]에 따른 구체적 적용범위 규정

## 1.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 연혁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당시 제10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함

1954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는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198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현행법과 같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함. 이후 10년 간 아무런 정함이 없다가 1998. 2. 24. 시행령(대통령령 15682호)에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면서 현재에 이른

## 1.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 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근로기준법

[표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별 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시간 관련 미적용 법규정

50조(일 8시간, 주 40시간 제한),

53조(연장근로 제한),

56조(가산수당)

## 1.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결과

1. 제한 없는 노동시간
2. 가산수당 미지급 = 저임금

## 1.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9년 6월 18일부터 2020년 6월 18일까지
2. 근무장소 : [REDACTED]
3. 업무의 내용 : [REDACTED] 백반집을 관리하는 쉐프
4. 소정근로시간 : 1일 11시간 (휴게시간 : 2시간 포함)
5. 근무일/휴일 : 토요일을 포함한 주6일 근무/매주 근무일 제외한 1일 휴무
  -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근무한다.
  - 2019년 6월은 근무일 수에 따라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금액으로 지급한다.
  -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1일 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다.
6. 임금
- 연봉 : 42,000,000원(사천이백만원)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9년 11월 0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REDACTED]
3. 업무의 내용 : 백반집을 관리하는 보조셰프
4. 소정근로시간 : 1일 11시간(휴게시간 2시간 포함)
5. 근무일/휴일 : 주말을 포함한 주6일 근무  
[REDACTED]
6. 임금
- 연봉 : 3,000만 원(삼천만 원)

월 ~ 토 09~20시  
(9시간, 휴게시간 2시간 )

9시간 \* 6일 = 54시간(-5시간)  
11시간 \* 6일 = 66시간(-5시간)

+ 매주 금요일 기약 없는 근무

# 1.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편의점 일반적인업무**

✓ 채용정보

업무내용  
지원자격  
우대사항 동종업계 경력자

✓ 근무조건

근무요일 목  
근무시간 23:00 ~ 06:00  
근무기간 6개월~1년  
급여 시급 10,030원

주 7시간

시급 10,030원

70,210원

## 2. 의도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 : 법 적용 제외 노동자(감시단속, 농업 등)

### ✓ 법 규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식재(植栽) · 재배 ·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 포획 ·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2. 의도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 : 법 적용 제외 노동자(감시단속, 농업 등)

### 감시적 노동자

- (감시적 근로)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서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제68조제1항제1호)
  -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와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제68조제1항제2호)

### 단속적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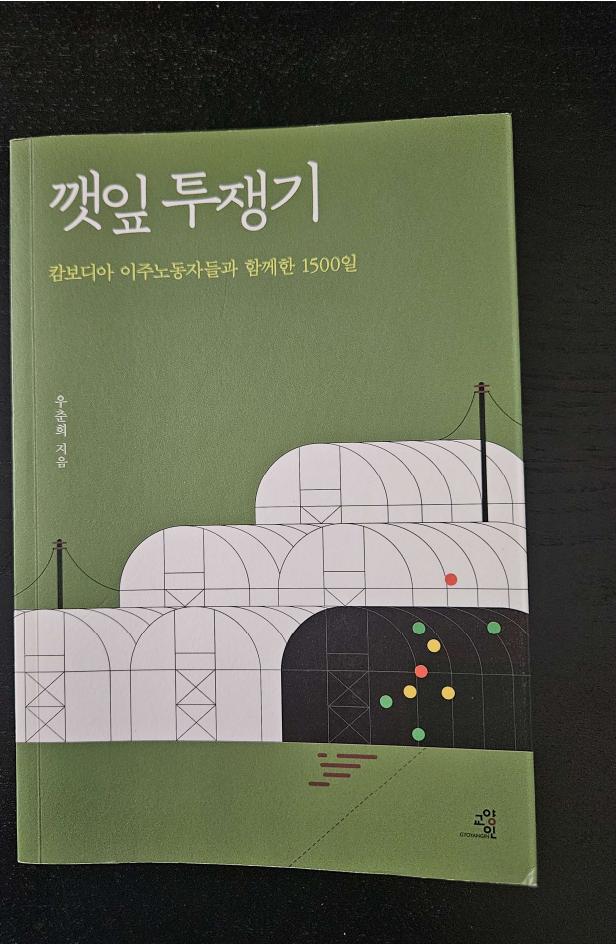
- (단속적 근로)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제68조제2항제1호)

## 2. 의도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 : 법 적용 제외 노동자(감시단속, 농업 등)

근로계약서					
사용자	사업체명	[REDACTED]	대표자	[REDACTED]	
	주소	[REDACTED]			
근로자	성명	[REDACTED]	생년월일	1961.09.17	
	주소	[REDACTED]	연락처	[REDACTED]	
위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장소	[REDACTED]호텔	직무	[REDACTED]		
계약기간	2022-01-01	~	2022-12-31	직급	설비주임(교대조)
급여적용기간	2022-01-01	~	2022-12-31	현장내리인	[REDACTED]
수습기간	2022년 1월 1일				성명 : [REDACTED]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근로기간을 적용하며 이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발생시 또는 당시 업무 평가 기준 미달시 해고고통보 없이 사측은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 중 100%의 임금을 지급 한다.				
급여조건	"근로자"의 월급여 총액은 2,470,000원(제수당 포함)이고 임금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금구성	형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기준시급	9,737원	2022년 법정최저시급 이상(9,160원 이상)		
	통상시급	10,422원	(기본급+식대비)/146.021	면장·야간·휴일 근로시 적용 시급	
	① 기본급	1,421,758	기준시급*146.021(주휴수당 포함)	(8H*14H)*30.42)/4	
	② 연장근로수당	713,305원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	당직서 기준 근로시간8시간+ 6시간 추가근무	
	③ 이간근로수당	158,512원	통상시급*이간근로시간*0.5배	당직서 이간근로시간 4시간	
	④ 직책수당	-	회사내규	-	
	⑤ 직대보조금	100,000원	회사내규	-	
	⑥ 인자수당	76,425원	(통상시급*첫해년도 연차 11개/12개월)	-	
	월급여 총액	2,470,000원	친필 단위 미만 급여 총액 첨단위 결산		
수습급여 총액	2,470,000원	수습기간 중 월급여의 100% 지급			
임금계산기간 및 지급일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근무한 일수를 계산하여 당월(10)일이 근로자 명의계좌에 지급한다.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결근 한 일수에 따라 일급으로 환산하여 공제 후 지급한다.				
근로시간	일시운영기간	정식운영기간(변경가능)	휴게시간	12:00~13:00(1H), 주간 근무시 17:00~18:00(1H), 당직 근무시 21:00~22:00(1H), 당직 근무시 02:00~06:00(4H), 당직 근무시 (현장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
	09:00~18:00(9H) 13:00~09:00(20H) 주/당/비/유	09:00~18:00(9H) 13:00~09:00(20H) 주/당/비/유		
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을 적용한다. 주휴일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한한다. 업무시정 또는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주휴일 결정 기준을 인지하고 사전에 이해 동의합니다.			
	2022년 1월 1일 성명 :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사용을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부여한다.			
	"근로자"의 근무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 신축할 수 있고, 근로시간의 시증은 근무지 규정에 따른다.			
근무조건	당직원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연수인계 후 퇴직장을 원직으로 한다.			
	상기 본인이 회사할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합니다.			
퇴직절차	2022년 1월 1일 성명 :			
	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이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이상 계속근무를 원활시 또는 신규 채용 시는 "사용자", "근로자" 힘의 후속적으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세법규 및 주무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④ "근로자"는 특별한 악정이 없는 한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근로자로서의 계속근무가 부적격한 경우 본 채용을 거절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기타	위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 서본1부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숙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 날인함.			
2022년 1월 1일				
(사용자)	[REDACTED]	[REDACTED]	(근로자) 성명 :	[REDACTED]
대표이사	[REDACTED]		생년월일 :	1961.09.17.

## 2. 의도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 : 법 적용 제외 노동자(감시단속, 농업 등)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근무시간	비고	휴게시간	비고
06:30 ~ 07:20	50분	07:20 ~ 07:35	15분
07:35 ~ 08:25	50분	08:25 ~ 08:40	15분
08:40 ~ 09:30	50분	09:30 ~ 09:45	15분
09:45 ~ 10:35	50분	10:35 ~ 10:50	15분
10:50 ~ 12:00	70분		
12:00 ~ 13:00	점심 시간		1시간
13:00 ~ 13:50	50분	13:50 ~ 14:10	20분
14:10 ~ 15:00	50분	15:00 ~ 15:20	20분
15:20 ~ 16:10	50분	16:10 ~ 16:30	20분
16:30 ~ 17:30	1시간		

※ 1일 : 06:30 ~ 17:30 (11시간)  
※ 근무시간에서 제외 (3시간)  
▶ 오전 휴게시간 총 1시간  
▶ 오후 휴게시간 총 1시간  
▶ 점심시간 1시간

1일(8시간) 작업량 15 BOX

1일 근무시간 : 8시간

니콜 씨 방문에 붙어 있던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휴게 시간으로 주지 않았다. 고용 센터의 담당 공무원들도 이 주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전국 대부분의 고용 센터에서는 '근로 시간 11시간, 휴게 시간 3시간'이라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버젓이 '견본'으로 사용하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니콜 씨의 사업주도 니콜 씨의 초과 노동을 인정하며 내게 말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안 맞지. 계약서대로 다 하면 아무도 농사 못 짓고, 애네들 전부 보따리 싸서 고향에 가야 해." 모두 임금 계산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쉬쉬하는 듯했다. 이 구조에서 이주노동자들만 하루 2시간씩 공짜 노동을 하고 있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관행이라고 해요"

"이 노동자가 어름에 월 노동 시간이 330시간이에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226시간이라고 써 있어요. 거의 100시간이 날아간 거죠. 사람이 이렇게 일하면 죽을 것 같아요. 게다가 임금은 130만 원이네요."

## 2. 의도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 : 법 적용 제외 노동자(감시단속, 농업 등)

구분	해고				휴가		주52시간 제한
	정당한 사유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예고	서면통지	연차휴가	출산휴가	
5인 미만 사업장	X	O	O	X	X	O	X
농림산업 등 적용제외	O	O	O	O	O	O	<b>X</b>

구분	임금		휴식			각종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휴업수당	
5인 미만 사업장	O	O	O	X	O	X	X	X	X	
농림산업 등 적용제외	O	O	<b>X</b>	<b>X</b>	<b>X</b>	<b>X</b>	O	O	O	

## 2. 의도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 : 법 적용 제외 노동자(특례업종)

### ✓ 법 규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2024년 6월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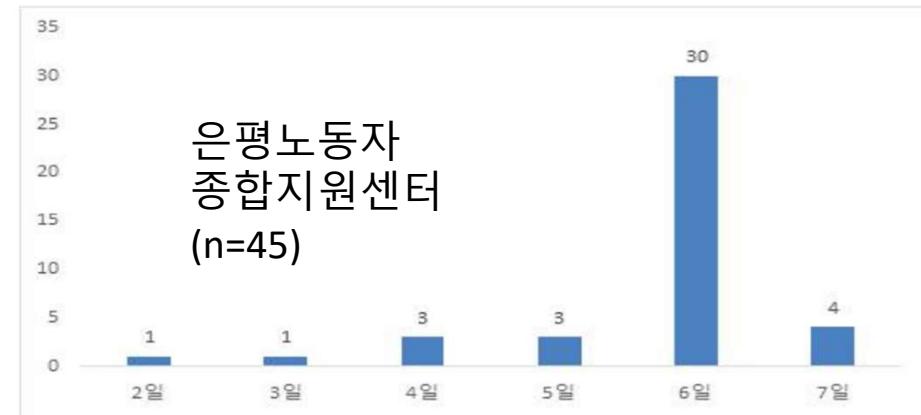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시민단체 '일과건강'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택배·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 537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시간을 포함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3시간으로 조사됐다. 1주일 평균 근무 일수도 6일 전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과로 집단'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일과건강은 해석했다.

〈그림 III-2〉 라이더의 주당 근무일 수



○ 하루 평균 업무 시간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1일 기준으로 평일근무는 일반적으로 9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60%를 넘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주말에는 응답자의 57.8%가 9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I-6〉 라이더의 업무 시간 (1일 기준)

구분	평일 근무		주말 근무	
	빈도	비중	빈도	비중
3시간 이하	8	17.8	14	31.1
4~8시간 이하	10	22.2	4	8.9
9시간 이상*	27	60.0	26	57.8
전체	45	100.0	45	100.0

\* 주 : 8.5시간도 포함

#### 4. 장시간 노동 뒤에 장시간 노동자 없다 : 편법으로 장시간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

## ① 연차수당 선지급 유형

## 6. 韓國

시급 : 10,030 원 (방문요양) ~~12,900~~ / 2700

① 상기 시급은 기본급(10,030원), 주휴수당(7,006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시간당627원)을 월 또는 연 단위로 정산하거나 근로의욕고취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해 15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전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차사용은 제한되지 않으며,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억월 급여에서 차감한다.

나. 한편, 우리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며,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2011. 07. 04.. 근로개선정책과-2022

성명 :		주민번호 : 501113-*****	
기 본 금	1,722,200	기타수당	0
주휴수당	344,440	치우개선비	0
연차수당	99,340	특별상여	0
식 대	19,500	특별수당	0
차량보조금	0	근속수당	0
방 문 요 양	197시간 30분	급여 총 액	2,185,480
방 문 목 육	0시간	공제 총 액	111,970
방 문 간 초	0시간	실 수령 액	2,073,510

## 4. 장시간 노동 뒤에 장시간 노동자 없다 : 편법으로 장시간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

### ② 보장되지 않는 휴게시간

#### 표준 근로계약서 (B)

공동생활가정(이하 '사업주'라 함)과 [REDACTED] (이하 '근로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개시일 : 2024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 (1년)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임금은 동일함)
2. 근무장소 : [REDACTED] 공동생활가정 (서울시 [REDACTED])
3. 업무의 내용 : [REDACTED] 공동생활가정 생활지도원 제반업무
4. 근로조건
  - 1) 근로형태 : 교대근무 (24시간 3일근무 후 4일휴무)
    - ① 근무시간 : 10:00 ~ 익일 10:00 (주 3 일)
    - ② 휴게시간 : 11:00 ~ 14:00 / 22:00 ~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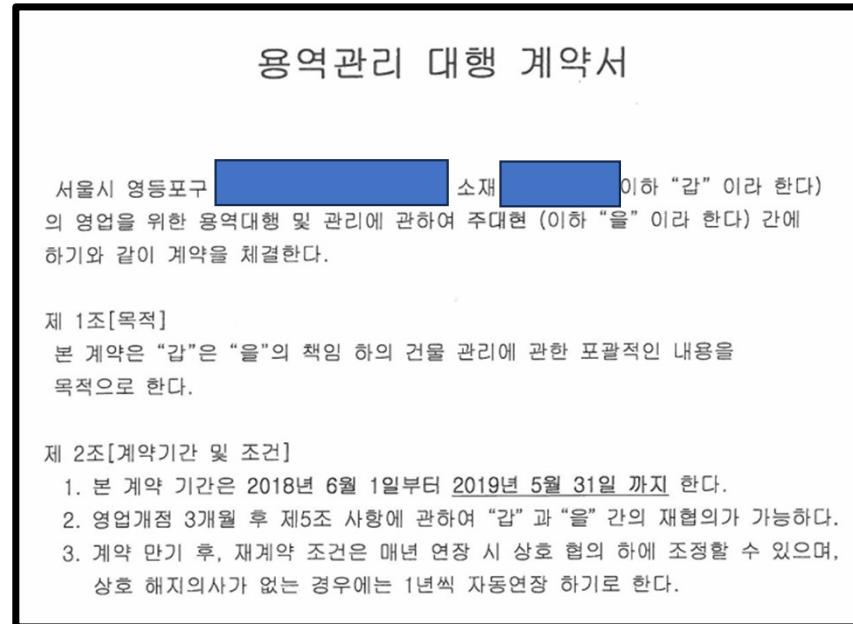
#### 표준 근로계약서 (C)

공동생활가정(이하 '사업주'라 함)과 [REDACTED] (이하 '근로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개시일 : 2024년 12월 06일부터 2025년 12월 05일까지 (1년)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임금은 동일함)
2. 근무장소 : [REDACTED] 공동생활가정 (서울시 [REDACTED])
3. 업무의 내용 : [REDACTED] 공동생활가정 생활지도원 제반업무
4. 근로조건
  - 1) 근로형태 : 교대근무 (24시간 3일근무 후 4일휴무)
    - ① 근무시간 : 10:00 ~ 익일 10:00 (주 3 일 숙박)
    - ② 휴게시간 : 11:00 ~ 14:00 / 22:00 ~ 06:00

## 4. 장시간 노동 뒤에 장시간 노동자 없다 : 편법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

### 3. 가짜 프리랜서



#### 제 3조[관리의 범위]

“을”은 “갑”的 건물 이용고객 및 입주자를 위하여 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갑”的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범위를 업무로 한다.

1. “갑”的 건물 입주자 관리 및 건물유지관리
2. “갑”的 건물 이용고객에 대한 건물관리 및 불편 최소화

#### 제 4조[관리 책임]

1. “을”은 “갑” 이용고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신의성실원칙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건물관리 및 유지에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

#### 제 5조[관리대행 용역비]

“갑”은 “을”에게 주차대행 용역비로 일금 일백팔십만원 (₩1.800.000) 월정액으로, 익월 1일 지급하며, 그 이외에 어떠한 비용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 6조[근무시간]

“을”은 “갑”的 원활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무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시간은 AM 07:00부터 PM 10:00 까지로 한다.

## 4. 장시간 노동 뒤에 장시간 노동자 없다 : 편법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

### ④. 웃기는 짬뽕

병원에서 원무과 당직 및 시설관리자 선생님  
을 구인합니다.

성명	무관(신임포함)	근여	회사내규에 따른
학력	학력무관	근무형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나이/성별	무관	근무일시	월수, 금/화, 목, 토, 일 16시 – 익일0시
부대사항	보유경험 장애인우대 활동/관련 학년직무 근무경험	근무지역	서울 종로구
근무조건	면근거주기, 운전가능자, 이간근무 가능자, 각업근 두 가능자		

근무분야	간호직, 세탁직, 아드미니스
근무요일/시간	각일근무(근무요일 협의가능)
근무지역	서울 - 종로구
급여	평일 70,000원 평일외 100,000원
	평일 오후6시 – 익일오전6시 토요일 오후3시 – 익일오전9시 공휴일 오전9시 – 밤원오전9시
당직(숙직)근무리 업무량은 거의 없습니다. 조용하고 개인시간이 많아 자기계발 하실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끌.